

2024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4.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4. 1.(월) 14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조태준 위원, 이승민 위원, 원은자 위원, 권현정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소영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16 :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정량평가 결과보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미래청년기획단-16729) ○ 2024-17 : 의용소방대원 000의 행사참석 시간 및 수당 수령내역 ○ 2024-18 :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16 : 부분인용 ○ 2024-17 : 기각 ○ 2024-18 : 기각(일부각하)

1. [의안번호 2024-16] :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정량평가 결과보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미래청년기획단-16729)

○ 000위원(장)

첫 번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4-16호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000위원(장)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부분공개 사안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공개하지 않으신 내용들이 개인정보라든가 법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향후에 일부는 또 추가로 공개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적격자심의위원 관련 정보 중에 성명·소속·직위하고, 그다음에 소요예산하고 향후일정은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미 공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후에 공개가 될 예정인가요?

○ 000팀장

사실은 이 당시의 이 계획서는 정량평가 결과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적격자심의위원을 공개할 수 없었지만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 하고 나서는 사실상 공개를 했던 사항입니다. 공고문에도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적격자심의위원 관련 정보하고 소요예산하고 향후일정 정도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도 그냥 단순히 그냥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이어서요.

○ 000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개가 된 건 아닌데 곧 공개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 000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과 관련된 정보는 작년에 공고문으로 사실 공개는 됐었고요.

○ 000위원(장)

여기 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직위가 공고가 이미 다 됐던 내용인가요?

○ 000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성평가까지 해서 적격자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 1순위 업체가 누구인지 공개를 하는데요. 그때 공고문에는 명단하고 소속까지만 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 000위원(장)

평가위원 7명 모두의 성명, 소속은 1순위를 공개하면서 같이 공개가 되었다?

○ 000팀장

맞습니다.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 000팀장

그리고 예산도 그냥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향후일정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만약에 공개를 하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부분공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000위원(장)

잠깐만요. 이거는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공개하시겠다고 한 내용들은 우리가 부분공개 결정을 내려줘야만 공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이 결정이 어떻게 날지랑 상관없이 공개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소요예산이랑 이런 것들이요.

○ 000팀장

저희도 무조건 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검토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000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왜 소요예산하고 향후일정은 그냥 비공개로 처리하셨어요?

○ 000팀장

사실상 저희가 이 문서 자체가 부분공개된 문서라서 그냥 부분공개된 채로 드린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건 아닌 사항이어서요. 그러니까 청구인께서는 정량평가 결과랑 업체 관련 정보를 더 원하시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거든요.

○ 000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공개하실 때 여기 보면 2024년 예산안은 이미 공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이미 지금 공개가 됐는데 향후에 추가로 공개하라고 하면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요예산은 그러면 이것과 또 다른 건가요?

○ 000팀장

위원 참석수당이나 회의준비 비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요. 소요예산은 그냥 심의위원회 개최, 정말 사무관리비 수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 000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부분공개를 하셔서, 그러니까 일정한 내용들을 지우고 부분공개를 하셨잖아요.

○ 000팀장

네.

○ 000위원(장)

그런데 이미 공개된 내용 중에 보면 여기 1항 추진개요에 있고 공모개요에 있고, 거기에 2024년 예산안 해서 얼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미 청구인한테 공개한 거 아니냐고요.

○ 000팀장

이미 청구인한테요?

○ 000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 예산안 해서 이걸 공개된 것 같은데.

○ 000팀장

저희는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뒤에 소요예산이라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 000위원(장)

거기 있는 거를 추가 공개하겠다? 행정사항 소요예산을?

○ 000팀장

맞습니다.

○ 000위원(장)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000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000위원님 질문하시지요.

○ 000위원(장)

이거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이 두 기간 중에서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있나요?

○ 000팀장

수탁 두 개 법인 중에서도요?

○ 000위원(장)

네.

○ 000팀장

있습니다.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 000위원(장)

1순위 업체가 선정됐고, 지금 운영 중인 거지요?

○ 000팀장

맞습니다.

○ 000위원(장)

그러면 이의신청인은 지금 현 수탁사업자에 대해서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 000팀장

수탁사업자가 누군지요?

○ 000위원(장)

선정된 수탁사업자가 누군지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정보공개청구인이요.

○ 000팀장

그거는 이미 작년 12월에 적격자심의하고 나서 바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누군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 000위원(장)

그런데 평가점수가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건가 보네요?

○ 000팀장

네.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 000위원(장)

000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000위원(장)

답변 주신 것 중에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했을 때 이 문서 자체가 부분공개 문서라서 뭐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 건가요?

○ 000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량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 다만 뒤에 경미한 사항 까지 부분공개 부분을, 특별히 공개해도 되는 부분까지는 공개해도 됐었는데요. 이 문서 자체가 부분공개를 했던 거라 저희는 이 문서 그대로 청구인에게 부분공개를 한 거라서요.

○ 000위원(장)

그러니까 문서 작성 이후에 이 운영계획 자체가 부분공개 문서라서 그냥,

○ 000팀장

그러니까 더 공개해도 되는 사항이 사실은 있기는 있었는데요.

○ 000위원(장)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에 공개된 부분만, 그러니까 비공개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갔다가 말씀이신 거지요?

○ 000팀장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절대 공개하면 안 됐었거든요.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 000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3월 13일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렸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위원 관련된 정보 등은 비공개 요청을 하셨던 거지요?

○ 000팀장

당시에는 저희가 부분공개할 때 작년 기준으로 내보낸 건 사실입니다.

○ 000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비공개로 요청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비공개로 나갔던 거지요?

○ 000팀장

맞습니다.

○ 000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의신청하셔서 지금 위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향후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를 하되, 업체정보랑 정량평가 결과는 7호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3자 쪽에도 비공개 요청을 하셨네요?

○ 000팀장

맞습니다.

○ 000위원(장)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요청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 000팀장

맞습니다.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을 때 위원 관련해서는 그냥 관례적으로 공개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 000팀장

그러니까 적격자심의 전에는 공개를 안 하고요. 당시 이 문서는 적격자심의 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적격자심의를 하고 나면 명단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고 올릴 때 저희가 적격자 심의결과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잠깐 퇴장하셨다가 저희 논의 마친 다음에 다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심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위원(장)

이게 지금 정량평가 결과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선정이 다 끝난 상황이라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비밀로 유지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비공개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소관부처에서도 공개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그대로 부분공개 결정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원들은 소속하고 성명까지는 나갔다고는 하는데요. 여기 보면 추가자료로 직위까지 돼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공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 성명, 소속, 직위하고 소요예산, 그다음에 향후일정 이 부분은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정보랑 정량평가 결과는 비공개, 그다음에 나머지 요청한 부분은 공개하는 결로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위에 업체 예산내역, 향후일정 이 부분은 부분공개하고요. 붙임자료로 요청한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정량평가 결과 세부내역은 7호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000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위원(장)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000위원(장)

저도 그러면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7호에 따라서 부분인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모신청한 업체의 정보, 그다음에 정량평가 결과, 현장실사결과보고는 7호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위원들에 관련된 정보, 소요예산, 향후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4-16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2024-17] : 의용소방대원 000의 행사참석 시간 및 수당 수령내역

○ 000위원(장)

두 번째 안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7호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위원(장)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씨의 의용소방대 행사 참석시간 및 수당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해달라고 청구를 한 건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씨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했고, 거기에 의용소방대 임용과 관련해서 보면 관할구역 내에 인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의용소방대로 활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거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씨가 근무하는 △△△ 회사에서 공익신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대문소방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거고. 그런데 서대문소방서는 이 □□□씨한테 관련 자료를 다 줬다고 하고 있거든요.

관련 자료를 줘서 또 회사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또 동일한 내용을 정보 제공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씨가 회사에다가 자기가 받은 정보를 제공한 게 확인이 되나요?

○ 000팀장

□□□씨가 제출을 해서 회사에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이 왔었습니다. 낸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답변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하고, 불가한 건 불가하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확인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 000위원(장)

그런데 여기 □□□씨한테 제공한 정보를 보면 출석일자, 출석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씨가 그러면 회사한테 정보 제공을 안 해서 회사가 추가로 청구를 한 건지.

○ 000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씨한테 시간하고 다 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씨한테 받은 그 자료를,

○ 000위원(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 000팀장

그대로 붙여서 저희한테 이거 확인해 줘라, 이 사실이 맞냐 이렇게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치를 또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 000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서대문소방서는 이 공문이 맞다는 거는 확인해 줬다는 거지요?

○ 000팀장

네. 저희가 개인이 요청하면 줄 수 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저희가 있는 그대로 해서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또 계속 이렇게 이의신청하고 이러셔서요.

○ 000위원(장)

이 통보내용을 봐도 만약에 휴가를 냈다고 하면 문제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고, 또 이게 근무시간이었다 하더라도 되게 짧은 시간밖에 출석한 이력이 없어서 큰 징계사유로도 보이지 않거든요. △△△ 회사는 □□□씨 관련 건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 000팀장

맞습니다.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000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저도 특별히 더 드릴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요. 다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잠시 이석하셨다가 저희 논의 마친 다음에 다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심위원님 먼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위원(장)

의용소방대는 민간인들이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는 영역인데 징계를 위해서 지금 의용소방대 소속 회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거는, 만약에 정보공개청구해서 그 정보가 제공이 된다면 이런 공익활동을 누가 할지 의문이 들어서 사생활 영역으로 보호해 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게 근무이탈 같은 경우는 회사 당사자 간에 걸쳐서 확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제3의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징계하는 건 더욱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6호에 따라서 기각 의견입니다.

○ 000위원(장)

감사합니다. 000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위원(장)

이걸 어떻게 활용하든 간에 이 내용 자체가 비공개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6호에 따라서 비공개 의견입니다.

○ 000위원(장)

감사합니다.

000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위원(장)

저도 6호 비공개, 같은 의견입니다.

○ 000위원(장)

저도 6호에 따라서 비공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6호에 따라서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심의회원 4명 중 4명이 6호에 따라서 본 안건은 기각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4-17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번호 2024-18] :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 000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18호 자치행정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000위원(장)

안녕하세요.

우선 보내주신 검토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일부 부분공개하셨잖아요. 총액과 관련된 부분이랑 측정 단위별 수량 및 단가는 공개를 하신 거지요? 지금 비공개 자료 중에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게 어쨌든 총합을 하면 지금 공개자료가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이렇게 총액은 공개하고, 항목별로 금액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은 비공개를 했을 때 어쨌든 총액 부분도 지금 비공개 사유로 잡아주신, 내부검토 중이다, 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요? 총액도 비공개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총액은 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인가 그 부분이 우선 좀 궁금했거든요.

○ 000주무관

일단은 총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수요액과 수입액의 총액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의견서 설명자료로 같이 넣어드린 바와 같이, 특히나 세입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거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 저희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000위원(장)

그런데 보면 내용 주신 것 중에 어쨌든 조정교부금이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가 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게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차액이 재정부족액이 되는 거잖아요.

○ 000주무관

맞습니다.

○ 000위원(장)

그러면 이거 총액만으로도 각 자치구별 재정 부족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정보만으로도 조정교부금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안 됐다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세분화별로 알게 된다고 하면 내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총액 차액 말고 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하실 때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합산돼서 교부금이 최종 산출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000주무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수요가 각각의 항목별로 산출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수입과 수요 모두 기초수요와 수입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보정수요와 보정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연구를 실시하면서 자치구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다 함께 협의를 해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다 같이 좀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추계를 기초로 해서 산정을 하고요. 수요도 마찬가지로 각 항목마다 각각 수량이 얼마씩 책정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 사업부서에서도 통계치를 받고, 자치구에서도 통계치를 받아서 비교 분석해서 산출을 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자치구가 얼마씩 수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치구가 각 항목마다 얼마씩 우리가 불리하냐 그런 유불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버리는 경우에는 그것이 자치구별로 너무나 침해한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침해한 이해관계가, 너무나 갈등 상황이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너무나 정치화될 수 있는 우려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일부 부분공개, 일부 비공개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000위원(장)

그리고 지금 청구인이 이의신청하면서 추가로 요구한 정보들에 관해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별 예산편성과목 이거는 부존재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자치구별, 측정단위별, 종류별 수량 예시 이것도 부존재한다고 기재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청구인이 요구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서요. 예산편성과목 이라고 하면 청구인이 말하는 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정보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 000주무관

지금 청구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청구인이 서식에 예시로 들어주신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어떤 과, 어떤 과의 예산 등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과에 어떤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냈는지까지도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조정교부금 산정을 할 때에 기준재정수요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치구에서 어떤 과에 어떤 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을 저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적인 금액으로서의 수요액을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자치구의 예산과목과 명확히 대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구인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과목이라고 하시는 게 명확히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000위원(장)

지금 청구인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청구인이 작성해서 붙임으로 요청 서식이라고 보내준 거를 보면 이거 지금 예시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안에 구체적인 금액 정보 빼고 이 표만 제공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항목으로 지금 그 금액이 이 항목이 있는 거다 이 정도의 표 예시는 정보공개를 할 수는 없나요? 지금 보면 지금 특정 항목 자치구별, 단위별, 종류별 수량 예시라고 하면 지금 비공개 정보 3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정보 다 빼고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이렇게 이 항목으로 지금 정보가 있는 거다. 이 표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000주무관

이 3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 000위원(장)

저도 정확히 청구인이 어떤 정보를 달라고 하는, 물론 청구인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단위별 금액까지를 다 알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기재를 하고 있는 게 측정항목 자치구별, 측정단위별, 종류별 수량 예시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위에 구분으로 된 표 이 항목으로 수량이 계산된다라는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안에 숫자 정보는 다 빼고 이 표 자체는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숫자는 다 빼고요. 구분 해서 지방의원수,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 000주무관

아, 구분해서요?

○ 000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안에 구체적인 숫자 정보는 다 비공개하되, 이 표의 항목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예시라고 하시니까. 이 항목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는 가능하지 않냐는 거지요.

○ 000주무관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측정단위의 수량이라 할 때 지방의원수, 인구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 000위원(장)

네.

○ 000주무관

이거는 저희가 조례상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 000위원(장)

조례상에 이 항목이 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건 이상입니다.

○ 000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 000위원(장)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볼게요.

그러면 이 청구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표를 보면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 표하고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첫 번째 표 같은 경우 보면 항목들이요. 그게 관련 조례에 있는 거라서 유사한 건가요?

○ 000주무관

첫 번째 표에 그 위에 있는 구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 000위원(장)

네.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뭐 이런 것들요.

○ 000주무관

맞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다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 000위원(장)

그런데 청구인이 작성한 한글파일 이 양식대로 청구인이 작성을 요청한 건가요?

○ 000주무관

맞습니다.

○ 000위원(장)

왜냐하면 서식이 똑같아서요.

○ 000주무관

실은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식과는 조금 다른 서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께서 이 서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위원분들께 어떤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비공개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작성해서, 조금 가공을 거쳐서 작성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 000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비공개 자료 중에서 2024년 조정교부금 산정금

액 같은 2번하고 3번하고 쪽쪽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표들은 전부 다 금액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000주무관

지금 예산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기반이 있다 하면 이대로 집행이 되지만, 현재의 예산이 저희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정교부금은 2024년도 서울시 세입을 기반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의 세입이 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실적에 따라서 올해 예산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도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000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2024년도 거라서 그러는데 2022년도, 2023년도 건 이미 예산이 집행된 거잖아요.

○ 000주무관

맞습니다.

○ 000위원(장)

그 표 같은 경우는 공개 대상이 되나요?

○ 000주무관

그런 자료들도 현재는 저희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000위원(장)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 000주무관

지금 청구인께서 요청하신, 특히나 기준재정수입액의 항목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소관부서에서는 5호에 따라서 내부검토 사안으로 비공개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 000주무관

네.

○ 000위원(장)

그런데 5호를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지금 5호에 따라서 내부검토 사항으로 분류를 하셨고, 2024년도는 아직 내부검토 과정이니까는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이게 2024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면 공개를 하실 줄 알았는데 2022년도, 2023년도 것들도 공개를 안 하셨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걸 비공개로 갖고 계시는 거네요?

○ 000주무관

계속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 000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디 보면 이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잠깐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뒤돌아보면 구청 간에 어떠한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비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 000주무관

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000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 000위원(장)

혹시 이런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례가 있나요?

○ 000주무관

저희가 2018년도에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방침에 대한 정보공개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비공개처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에 저희는 아니고 경기도의 사례입니다마는,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000위원(장)

그때 기각 사유 중에 몇 호를 적용을 했었나요?

○ 000주무관

그때도 동일한 사유를 기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00위원(장)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안건으로 해서 기각인 거예요?

○ 000주무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재결내역서에 보면 기초지자체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더 많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써 피청구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제약되어 결국 피청구인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000위원(장)

그런데 이게 5호를 보면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게 별도의 항목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중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000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 000주무관

그런데 그것 또한 저희가 기준재정수입 같은 경우에는 산정을 할 때 최근 3년 동안의 예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 맞물려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전 연도의 정보공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 내

부의 의사결정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000위원(장)

어차피 이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점증예산이지요? 이게 확 바뀐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 전년도 또는 직전 연도의 어떠한 배정 비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게 점증적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 000팀장

편성이라기보다는 산정이라는 개념이 맞을 거고요. 왜냐하면 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25개에다가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아까 수입을 추계를 통해서 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추계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추계를 했는데 그다음에 결산차액이랑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다음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결산차액을 많이, 그러니까 과소추계를 해서 재정부족액이 더 늘어나서 많이 받아간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수입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사실 계속 조금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5호로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 000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예산편성은 아니지만 점증주의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뭐 편성은 아닌데, 제가 용어가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도별 점증주의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5호의 내부검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000팀장

네.

○ 000위원(장)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끊기게 되면 사실 5호를 적용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은 문의를 드렸습니다.

000위원님, 혹시 질의 더 있으신가요?

○ 000위원(장)

아까 재결례가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사실 원래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서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게 언제 결정되냐, 내부검토는 언제 끝나냐 이것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제하라고 돼 있는 거는 그때 가서 의사결정 끝났고, 내부검토 끝났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청구 다시 해라. 그런데 그때도 다른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여하튼 그런 기회를 주려고 규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게 만약에 내부검토로 계속 가버리면 이게 내부검토의 개념이 너무 무한정 확대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재결이 있다고 해서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 이것만 이유로 기각을 한 건지, 아니면 5호의 앞에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거부한 건지, 그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 000주무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 이런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기에 적혀 있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지역개발 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을 말하는 바, 기초지자체는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더 많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계연도 중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배분결과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부터 자치구 간 형평성, 사업의 시급성 등 심사기준에 대하여 끊임없이 시비를 다투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되어 결국 피청구인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명시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 000위원(장)

그게 어디 핵심인가요?

○ 000주무관

이것이 2021년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부분입니다.

○ 000위원(장)

거기에 사건번호도 같이 있나요?

○ 000주무관

2021년도 11102번입니다.

○ 000위원(장)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문을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안 나와서 제가 전문을 보지를 못 했어요.

○ 000위원(장)

알겠습니다.

○ 000위원(장)

재결에서도 회계연도 중에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공개될 수 있다는 취지인지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 000주무관

아무래도 특별조정교부금이랑 지금 청구인께서 요청하신 부분인 일반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산정방식이나 자치구별로 얼마씩 배분을 하는지가 특정연도에 한정이 되는데요. 지금 청구인께서 요청하신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입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3년치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려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두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위원(장)

그런데 청구인은 지금 2024년도 거를 요청했으니까 5호에 따라서 결정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 000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없으시면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잠깐 퇴장하셨다가 저희 논의 마친 이후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위원(장)

5호로 비공개 결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요청한 부분인 부존재 정보에 해당하는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각하 결정이 나갔던 것 같은데요. 맞지요?

○ 000위원(장)

네.

○ 000위원(장)

그러면 두 항목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호 비공개 결정으로 하겠습니다.

○ 000위원(장)

감사합니다.

000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위원(장)

000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네 건에 대해서는 5호에 따라서 비공개, 그다음에
두 건은 정보 부존재에 따른 각하 의견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각각 비공개와 각하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입액 등에 대해서는 5호에 따라서 비공개, 그다음에 정보부존재 두
건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으로 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4-18호는 “기각” 및 “각하” 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